

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-650호

-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-
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19호(2005.12.29.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 - 40호(2007.05.17.), 제2007-68호(2007.07.19.), 제2010-50호(2010.07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1호(2017.4.20.)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-56호(2018.07.05.), 제2024-51호(2024.04.18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127-4666) 또는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2-966-9000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6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4.05.16. ~ 2024.05.30.

나. 공람장소 :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), 제기
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
릉로 86, 2층)

다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명칭 :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
- 3) 시행면적 : 33,485.70㎡
- 4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50개월
- 5) 변경내용(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)
 - 기 정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9. 3. 7.)로부터 60개월
 - 변 경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9. 3. 7.)로부터 150개월
- 6)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).

라. 기타사항 : 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, 관계법령 검토
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

공 람 의 견 서

공 고 명	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			
공 람 기 간	2024년 5월 16일 ~ 2024년 5월 30일			
대 상 물 건 지	건 물 :			
	토 지 :			
의 견 제 출 인	성명	(인)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내 용				

2024. 5. .